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7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고동진・박준태・서일준

이헌승 • 박정훈 • 최수진

엄태영 · 구자근 · 김형동

한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, 중앙당과 시·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
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.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,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,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

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 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에 소재한 시· 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,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).
- 나.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, 지역당은 중앙당(창당준비위원회)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(안제6조 및 제9조).
- 다.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라.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·도당,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(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3조제4항 신설).
- 마.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 제1항).
- 바.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 규정은 폐지하고 정당은 필 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·시·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).

- 사.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(안 제44조제1항제1호).
- 아.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(안 제59조제1항제3호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179호) 및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으로"를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 당(이하 "지역당"이라 한다)으로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"를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7조의2(법정지역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 및 제18조의2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"로 한다. 제6조 중 "100명 이상의"를 "100명 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30명이상의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창당승인)"을 "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 당"으로 하다.

제13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을 "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법정지역당수) 정당은 30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다.

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 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·단서 및 제4항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,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·도당,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 다.

제24조제1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, 소속 시·도당에"를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하며, 소속 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, 지역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·도당 또는 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역당 또는 시·도당에 각각 해당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26조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 제27조의2제1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당에도 2명 이내의 별도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제35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법정당원수)의 요건에"를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7조의2(법정지역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법정당원수) 및 제18조의2(지역당의법정 당원수)의 요건에, 지역당은 제18조의2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에, 지역당은 제18조의2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에"로 한다.

제37조제3항 중 "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, 읍·면·동 별로

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"를 "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·시·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"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"를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7조의2(법정지역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 및 제18조의2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"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"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)"를 "(시·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47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호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당의 등록 및 성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및 성립된 정당으로 본다. 다만, 각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 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 및 성립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항 후단 중 "중앙당과 시·도당"을 "중앙당, 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정당은 수도에 소재	제3조(구성)
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・광역시	
·도에 각각 소재하는 <u>시·도</u>	<u>시·도당</u>
<u>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</u>	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
<u>으로</u> 구성한다.	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
	설치하는 지역당(이하 "지역당"
	<u>이라 한다)으로</u>
제4조(성립) ① (생 략)	제4조(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등록에는 <u>제17조(법</u>	②제17조(법
<u>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</u>	<u>정시·도당수)</u> , 제17조의2(법정
<u>도당의 법정당원수)</u> 의 요건을	지역당수), 제18조(시・도당의
구비하여야 한다.	법정당원수) 및 제18조의2(지역
	<u>당의 법정당원수)</u>
제6조(발기인) 창당준비위원회는	제6조(발기인)
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	
의, 시·도당의 경우에는 <u>100명</u>	<u>100명</u>
<u>이상의</u> 발기인으로 구성한다.	이상의, 지역당의 경우에는 30
	<u>명 이상의</u>
제9조 <u>(시·도당의 창당승인)</u> <u>시·</u>	제9조 <u>(시·도당 및 지역당의 창</u>
<u>도당</u>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	<u>당승인)</u>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	
있어야 한다.	
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	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

-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 ① ------음 각 호와 같다. ------
- 1. ~ 6. (생략)
- 7. 시 · 도당의 소재지와 명칭
- 8. <u>시·도당</u>의 대표자의 성명· 주소
- ②・③ (생 략)
- 제13조(시 · 도당의 등록신청사항)
 - ①<u>시·도당</u>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5. (생략)
 - ②·③ (생 략)
- 제14조(변경등록)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및 제13조(시 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하다.
 -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8. <u>시·도당 및 지역당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시ㆍ도당 및 지역당의 등
<u>록신청사항)</u> ①시·도당 및 지
<u>역당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변경등록)
<u>\lambda</u>
<u>•도당 및 지역당</u>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2(법정지역당수) 정당은
30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한
<u>다</u> .
①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
원을 가져야 한다.

제19조(합당) ①・② (생 략)

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·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·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 음 날에 당해 <u>시·도당</u>은 소멸 된 것으로 본다.
- ⑤ (생략)
- 제23조(입당)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<u>시</u> <u>•도당</u>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법정당원수에
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지
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
두어야 한다.
제19조(합당) ①・② (현행과 같
승)
③
시·도당 및
지역당
<u>시·도당</u>
및 지역당
4
시·도당 및 지
<u>역당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입당) ①
<u>\lambda</u>
<u>·도당, 지역당</u>

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- ②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,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.
- ③입당신청인은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 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 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
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시·도당, 지역당
<u>시·도당,</u>
 지역당
③ <u>시·도당, 지역</u>
<u>당</u>

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<u>시·도당</u>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- 제24조(당원명부) ①<u>시·도당</u>에는 저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당은 <u>시·도당</u>의 당원 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 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시·도당</u> 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 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

<u>시·도당, 지역당</u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라 시・도당, 지역당 또는 그
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
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
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
는 시・도당 또는 지역당에도
<u>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.</u>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Ⅱ24조(당원명부) ① <u>시·도당 및</u>
지역당
② <u>시·도당 및 지역</u>
<u>당</u>
<u>시·도당</u>
<u>또는 지역당</u>

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<u>시·도</u> 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5조(탈당) ① 당원이 탈당하고 지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·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, 소속 시·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<u>시</u> <u>·도당</u>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.
-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·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,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. <후단 신설>

<u>시·도</u>
<u>당 또는 지역당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세25조(탈당) ①
<u>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</u>
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, 소속
시·도당 또는 지역당에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
<u>\]</u>
<u>·도당, 지역당</u>
·.
3
시·도당 또는 지역당
<u>이 경우 당원명부의</u>
기재를 말소한 시·도당 또는
지역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
였던 지역당 또는 시・도당에
각각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
한다 <u>.</u>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, 해당 <u>시·도당</u>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26조(탈당원명부) <u>시·도당</u>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7조의2(입당원서・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) ① 시·도당으로 및 폐기) ① 시·도당으로 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)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 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·도 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

	4
	<u>시·도당 또는 지</u>
	<u>역당</u>
제	26조(탈당원명부) <u>시·도당 및</u>
	<u>지역당</u>
제	27조의2(입당원서·탈당신고서
	의 보관 및 폐기) ① <u>시·도당</u>
	<u>및 지역당</u>
	② (현행과 같음)
제	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
	제한) ①

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④ (생 략)

제35조(정기보고) ①중앙당과 <u>시</u> 지 <u>· 도당</u>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(<u>시·도당</u>은 1월 31일)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중앙당과 시·도당은 제17조 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 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 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 여야 한다.

③·④ (생 략) 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·② (생 저략)

다만, 지역당에도 2명 이내의
별도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
<u>다.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35조(정기보고) ① <u>시</u>
<u>•도당 및 지역당</u>
<u>시·도당</u>
<u>및 지역당</u>
·
②제17조
(법정시·도당수), 제17조의2
(법정지역당수), 제18조(시・도
당의 법정당원수) 및 제18조의
2(지역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
에, 지역당은 제18조의2(지역당
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에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·② (현
행과 같음)

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③----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자치구・시・군, 읍・면・동별 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 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 다.

- 제44조(등록의 취소) ①정당이 다 >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 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
 - 1.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 수)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게 된 때. 다만, 요건의 흠결 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, 그 외의 경우에 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.
 - 2. · 3. (생략)
 - ② (생략)
- <u>소)</u>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·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

지역선거구 또는 구・시・군

제44조(등록의	취소)	1	
1. <u>제17조(법</u>	정시・	도당수),	제1
7조의2(법정	지역당	· 수). 제	18조

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 및

<u>제18조의2(지역당의</u> 법정당원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
<u>수)</u>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46조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 제46조(시·도당 및 지역당 창당 승인의 취소) ---------시·도당 및 지역당---

또는	창당	·준비·	위원회	회	7	약	에
정하여	여야 현	하며,	당헌	또 }	는	7	약
에서	정한	외의	사유	로	창	당	승
인을	취소	하는	때에	느	중	၀ှဲ-	당
또는	ユを	항당준	비위	원호	티의		대
의기	관에서	투표	是 是	결정	하	여	야
한다.							

제47조(해산공고 등) 제45조(자진 해산)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허위로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또는 제13조(시 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을 한 자
- 2. (생략)

<u>.</u>
제47조(해산공고 등)
<u>시·도당 또는 지역당</u>
· 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
1
<u>\}</u>
<u>·도당 및 지역당</u>
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<u><삭 제></u>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 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<u>둔 자</u> 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